예 산 총 칙

제 1조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2023년도 제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로 한다.

제 2조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09,381천원으로 한다.

제 3조 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업수입	**65,970천원**
* 영역별프로그램강습료	65,970천원
② 사업외수입	**51,051천원**
* 이월금	50,681천원
* 예탁금및예수금	0천원
* 이자수입	150천원
* 기타수입	220천원
③ 위탁금및보조금	**692,360천원**
* 위탁금	663,035천원
* 보조금	29,325천원

2)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인건비	**517,789 천원**
* 보수	330,753천원
* 수당	103,157천원
* 성과급	3,000천원
* 연금부담금 등	80,879천원
② 운영비	**50,603**천원
* 일반운영비	40,203천원
* 여비	1,160천원
* 업무추진비	6,360천원
* 자산취득비	2,880천원
③ 사 업 비	**233,719천원**
* 프로그램사업비	168,210천원
* 보조금사업비	29,325천원
* 특별지원사업비	36,184천원
④ 사업외지출 및 기타	**7,270천원**
* 사업외지출	0천원
* 예비비	7,000천원
* 반환금 및 기타	270천원

3) 2023년도 2차 추경 사업은 5개 분야, 31개 단위사업
(2023년도 기정 사업은 5개 분야, 31개 단위사업)

○ 따라서 2023년도 전체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음과 같다.
(수입 809,381천원 / 지출 809,381천원)

제 4조 (명시이월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5조 (계속비사업) 해당사항 없음

제 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조 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(또는 시설의 장)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

제 8조 기타 필요한 사항